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정 보 통 신 기 반 보 호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 기술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상향하고, 보좌하는 공무원 지정 및 관련 교육 등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1항 및 3항)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 소속과 직급의 명문화된 내용을 삭제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명시(안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21. ~ 7. 31.) 진행

3) 행정규제 : 비규제

대통령령 제 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삭제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관을 보좌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호책임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의 교류·협력,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 원”이란 <u>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 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 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 한다.</u>	제2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 회의 위원) 「정보통신기반 보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 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 원”이란 <u>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하 다)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u>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 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u>기획재정부차관</u> 2.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u> 3. <u>외교부차관</u> 4. <u>법무부차관</u> 5. <u>국방부차관</u> 6. <u>행정안전부차관</u> 7. <u>산업통상자원부차관</u> 8. <u>보건복지부차관</u> 9. <u>고용노동부차관</u> 10. <u>국토교통부차관</u> 11. <u>해양수산부차관</u> 12. <u>국가정보원 차장</u>	<삭제>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4.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u> 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u>정보보호책임관</u>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소속 공무원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u> 을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u>정보보호책임관</u> 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관을 보좌하는 <u>과장급 공무원</u> 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정보보호책임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u>정보의 교류·협력, 교육 등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u> 을 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